
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안건

2026. 5. 28.

관계부처 합동

데이터 정책 거버넌스(안)

1 추진 배경 및 경과

- 데이터는 AI 시대의 ‘원유’로서, 데이터 역량에 따라 국가 AI 경쟁력이 좌우될 만큼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
 - 특히, 단순한 양적 축적을 넘어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 수집·관리·활용 등이 필수적으로, 국가역량이 집중될 필요
- 하지만, 데이터 관련 위원회*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, 일관된 데이터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등 역량 결집에 한계 발생
 - *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(과기부),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(행안부) 등
 - 또한, 저작권, 개인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, 부처 간 협업·조정 필요성도 급증

< 각 부처별 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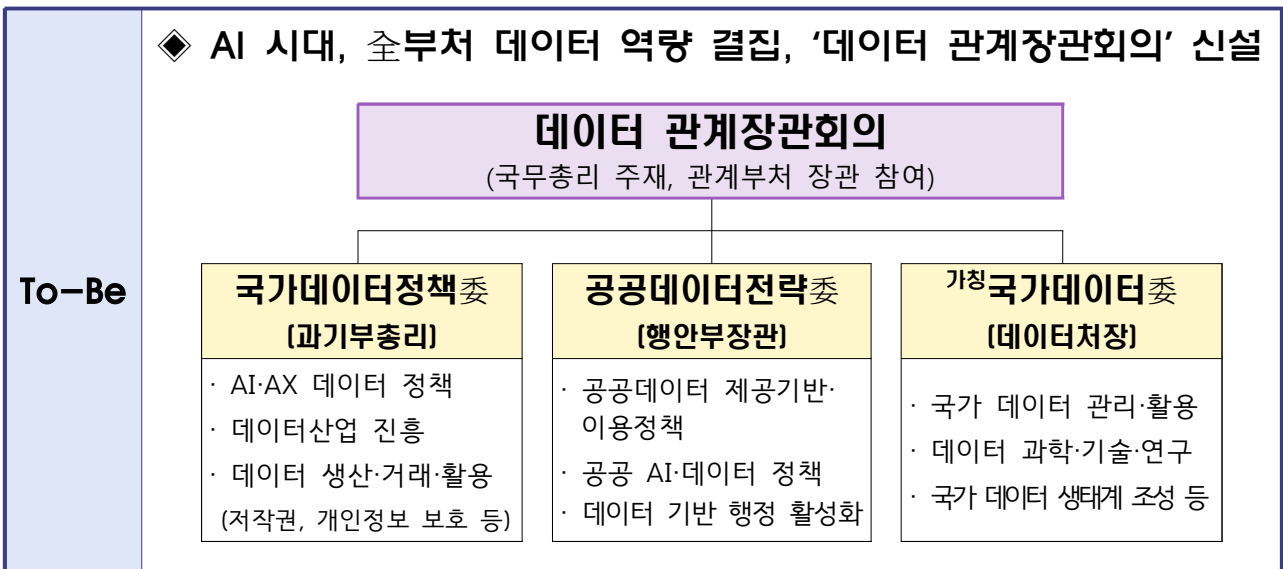
데이터 구축 및 개방	과기 AI개발 핵심데이터 구축, 행안 공공 AI-데이터 개방·공유, 문체 공공저작물 개방, 각 부처 의료·제조·모빌리티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 구축·개방 등
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	과기 국가 메타데이터 표준 마련, 행안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, 데이터처 통계 메타데이터 표준 구축, 각 부처 연구, 제조, 보건의료 등 분야별 표준 개발 등
산업육성 및 기반조성	과기 데이터 활용지원(바우처 등), 데이터거래사, 데이터 전문인력양성, 행안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, 중기 스타트업 대상 데이터 솔루션 제공, 각 부처 데이터 활용지원, 기술개발 등
데이터 안전 보호	개보위 개인정보, 문체 저작권, 복지 의료데이터, 금융위 금융데이터·신용정보, 방미통위 위치정보, 지재처 데이터 무단사용 범위 명확화, 과기 데이터 안심구역 등

- 이에, 데이터 거버넌스 장관 회의(국무총리 주재)를 개최(3월)하고, 관계 부처 실무 협의(4월) 등을 통해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논의

⇒ 범부처 데이터 역량을 결집하는 ‘데이터 정책 거버넌스(안)’ 마련

2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(안)

As-Is	◆ 과기정통부, 행안부 각각의 거버넌스 위주로 분절적 운영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(소관부처 : 과기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(소관부처 : 행안부)</td> </tr> </table>	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(소관부처 : 과기부)
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(소관부처 : 과기부)	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(소관부처 : 행안부)	
	◆ 데이터처 승격 → 국가 데이터 관리·품질 등 CDO 역할 정립 필요	



- ① **(총괄·조정)**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신설 (비상설 회의체)
 - AX 데이터 산업 진흥, 공공 데이터 활용 등 기존 위원회 역할 이외, 국가 데이터 관리,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포괄적 논의
 - * 부처간 쟁점이 많은 이슈 등 발생시 총괄·조정 기능 수행 (수시로 개최)
필요시, AX-AI 관련 데이터 정책 이슈는 과기장관회의를 활용하여 사전 이해 관계 조정
- ② **(기존 위원회 등)**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인 점을 고려하여, 타 위원회는 장관급으로 조정하여 상호연계 강화
 - * (기존)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,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장 : 국무총리 → 장관
(신규) 가칭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: 데이터처장
- ③ **(데이터처 신법)** 국가 데이터처 업무 중심으로 '국가데이터기본법 (가칭국가데이터위원회 포함)' 제정 추진
 - * 국가AI전략위원회 법률TF가 기본법 제정안 검토

3 운영 방안

◆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는 범부처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결정하거나, 주요 이슈에 대한 부처간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로 적극 활용

- ① (논의 대상) ▲범부처 데이터 종합계획(3개 위원회 모두 포함되는 내용), ▲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, 개인정보 등 당면 이슈 해결 등
- 각 부처에서 쟁점 해소 등으로 요청한 의제를 상정하고, 필요시 데이터 관련 주요 현안이 발생시에 동 회의체를 적극 활용

<데이터 관계장관회의 논의 의제(예시)>

순번	주요 내용	관계부처
1	AI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제도 상생발전 방안	과기부, 문체부 등
2	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	과기부, 행안부, 개인정보위 등
3	소산업 마이데이터 유통 촉진방안	복지부, 금융위, 개인정보위 등
4	민·관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 방안	과기부, 행안부, 데이터처 등

- ② (참석 대상) 국무총리(주재), 과기부총리, 행안부 장관, 데이터처장, 문체부 장관, 개인정보위 위원장 (각 부처의 長)

- 상정 안건에 따라 관련 부처도 회의 참석

- ③ (총괄 간사) 국무조정실 (경제조정실장)

- ④ (개최 주기) 반기별 1회*, 필요시 수시 개최

* 동 회의체 이외에도 3개의 산하 위원회가 연간 지속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는 연 2회에 걸쳐 주요 의사 결정 진행

4 향후 계획

관계 부처 법령 제·개정 (국회제출, ~9월)

* 데이터산업법(과기정통부), 공공데이터법(행안부), 국가데이터기본법(데이터처)

제2회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개최 (하반기)

* (안건) 개인정보, 저작권, 마이데이터 등 이슈 (잠정)

AI 대전환 시대,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

1 추진 배경

- AI 대전환 시대, 데이터는 ▲AI모델, ▲AI컴퓨팅 인프라(GPU 등)와 함께 국가AI경쟁력, AI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자산으로 부각
 - 미·중·EU 등 주요국, 글로벌 빅테크 등은 자체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·제도 등 정책적 지원, 고품질 데이터 확보 등에 총력
- 향후 2~3년이 AI혁신의 골든타임인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정책 마련 필요

< AI시대 데이터 활용 형태 변화 >

- AI 등 기술발전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이용형태가 지속 변화 중
 - (AI태동기) 초기 AI학습을 위한 대규모 라벨링된 비정형 데이터 확보 필요성 대두
 - (생성형AI) 품질·신뢰성이 높은 저작물·전문지식 데이터 활용이 보다 중요
 - (피지컬AI, 에이전틱AI) 물리적 상호작용, 추론 과정 이해를 위한 현장추론데이터 확보 강조

2 현황 및 한계

- (현황) 그간 데이터댐 등 AI학습용데이터 구축(총 903종), 공공 데이터 선정·개방(~'25년, 11만건) 등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·개방
 - 데이터 산업법·데이터 기반행정법 등 법·제도 정비, 데이터 안심 구역 신설,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

➡ 정부의 데이터 정책·투자와 민간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에 힘입어 데이터 산업 시장은 지속 성장 중('24(E) 30.7조원, 연 평균 10.3%('21~))

- (한계) 대규모 데이터 구축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, 정부사업 산출 데이터 등의 관리·활용체계 부재
 - 권리보호 중심의 제도가 AI학습 등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며, 중소·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활용능력, 시장 참여 기반도 부족한 상황

3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

- ◆ (비전)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모두의 AI 생태계 조성
- ◆ (방향) 양질의 데이터 확보·연계, 규제개선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
맞춤형 지원과 생태계 조성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

◇ (전략1)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·구축

- (구축) 고품질 추론(CoT), 수요기반 독자AI모델 개발 핵심 데이터, AI 안전·신뢰성, 성능 벤치마크 등 AI개발 핵심 데이터 구축
 - 범정부 AI학습용데이터 현황조사 후 가공·업사이클링하여 공개하고, 퍼지컬AI·제조 등 특화데이터* 확보, 데이터 스페이스** 구축·실증 추진
 - * (퍼지컬AI·제조) 행동데이터 특화 인프라, 데이터 라이브러리(제조 등) 구축, (모빌리티)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, (바이오) K-BDS·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개방, (문화) 대규모 언어문화 말뭉치 등
 - ** 참여자 간 합의된 규칙·수익배분을 기반으로 분야별 공유·활용 촉진(의료 등)
- (개방) AI·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, AI Ready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, 공공데이터 개방 제한제도* 개선, 공공누리 AI유형 신설 및 부착 의무화
 - * 제한요인 평가제도 신설, 담당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면책안내서 마련·면책조항 구체화
-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 복합데이터, 분야별 융합데이터 구축

◇ (전략2)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

- (연계) 공공·민간데이터 소재정보 단일창구 제공(원·원도우) 및 데이터 플랫폼 연계 의무화,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* 구축·확산
 - * 기관원천시스템 ↔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↔ 공공데이터포털
- 국가·통계 메타데이터 표준 구축 및 분야별 데이터 표준* 개발
 - * 바이오 등 연구데이터, 제조데이터, 보건의료 데이터 등 개발·확산
- (관리)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(AI허브 개편) 구축 및 민간데이터, 공공·산출데이터* 연계, 연구데이터법 제정 및 R&D 데이터 관리 강화
 - * 예산요구시 데이터 개방·활용계획 제출 등(영업비밀 등 고려 일부공개 등 허용)

◇ (전략3) 안전·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

- (제도) 저작물(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, AI특화 상담창구, 저작권법 개정 검토), 개인정보*(원본데이터 활용 등), 보건의료(심의 간소화) 제도 합리화 및 불확실성** 해소
 - * 공익목적의 AI학습을 허용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,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등
 - ** AI·데이터 활용 제한 규제 발굴·개선, 데이터 무단사용범위 명확화 등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
- (인프라) 전국 안심구역 클라우드 연계 및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검토, 권역별 안심구역 거점센터 육성·신규지정, 활용경진대회·실증 지원

◇ (전략4)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

- (기반) 중소·스타트업 AX 원스톱 바우처 및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지원, 전문인력 양성(해외대 연계), 데이터 산업 특수분류 개발, 데이터거래사* 개편
 - * 현행 데이터거래사(자격요건&40시간 교육) → 등급구분(3급, 2급, 1급(일반), 1급(전문))
- (유통·거래) 데이터 세액공제* 시행, 데이터 현물 자부담** 인정, 표준계약서(학습용데이터 거래) 마련, 저작권 배상보험 출시·가입지원
 - * AI개발을 위해 구매한 AI학습용데이터 : (중소) 최대 50%, (대·중견) 최대 40%(일반 증기분 기준)
 - ** 중소 제조사업(예 : 스마트공장 지원) 대상 시범도입 및 보완·확대 적용 등 검토

◇ (추진체계) 국가AX 확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체계 가동

- (지원체계) 과제별 추진내용을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데이터 기반 AX방향을 제시하는 '데이터전략맵*' 구축·확산 지원
 - * 정부 AX원스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각 부처·기관 별 데이터 전략수립 등 지원

4 향후 계획

- 과제별 주관부처 주도로 세부과제 신속 이행 추진 : (지속)
 - ※ 주요 과제는 필요시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과기장관회의 심의·의결 추진
- 제2차 「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」 수립 추진 : ~'26.下